



대구대학교와 강남대학교 간의 학점 교류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대구대학교와 강남대학교 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약서에 의거, 양 대학 학부 간 학생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협약서는 양 대학 간에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 ① 양 대학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강신청 공고기간(계절 학기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고기간)에 상대방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대학의 총장은 학점교류 수학희망자를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수강대학의 총장은 추천된 교류학생에 대한 수학허가를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④ 교류과목의 이수교과목 인정과 취득학점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수강대학에 납부한다.

제5조(성적처리) 교류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속대학의 수업관련 부서로 통보한다.

제6조(기타) ①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으며, 편의시설(도서

관, 실험실습실, 기타 학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에서 책임을 진다.

③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양 대학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 책임자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대학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본 협약서는 실무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7일



강남대학교
KANGNAM UNIVERSITY

교학부총장 유 양 근

유양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교무처장 함 재 용

함재용